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59호
- 나. 제출자 : 김현아 의원 외 9명
- 다. 제출일자 : 2015년 11월 6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우선 입학자격 근거규정을 수정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서울 시민 이외의 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아울러 4개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직업교육훈련시설 우선 입학자격 중 차상위계층의 근거규정을 수정함(제5조제2항제6호).
- 나.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입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제4호).
- 다.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10조에서 제12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상위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에게도 기술교육원의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동부, 중부, 북부, 남부 네 곳으로 운영되는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하려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정부의 인력양성사업 훈련생 교육기회 제공

- 현재의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입학자격 기준은 안 제5조 제1항1)에 따라 만 15세 이상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및 「지역산업맞

1) 제5조(입학자격 등) ①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5세 이상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출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서울 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기술교육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학자격을 폭 넓게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기술교육원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인력양성사업과도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이루는 것임.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신규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인력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제도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종을 선정하여 고시함.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를 포함하여 16개 지역에서 550억 규모로 운영되는 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체계임.
- 「국가기간전략사업 직종훈련」의 경우, 2015년 기준 19개 훈련기관 중 서울에 위치한 곳은 6곳뿐이며,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광역시와 도 단위의 16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많은 타 시도의 교육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

로 보여짐.

-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 참여 훈련생은 교육이수 후,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이 연계되어 있어 교육생의 취업률을 높이고, 서울시 기술교육원들의 수준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다. 통합운영위원회의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그 동안 기술교육원은 4개의 교육원을 각각 개별 법인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학과의 신설이나 통·폐합, 인사교류를 통한 질 높은 교사의 재배치 등이 매우 어려운 비탄력적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4개 교육원을 총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이하 ‘통합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심의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통합운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기술교육원의 합리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직업교육 훈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 인원 : 15명 내외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위원
 - 직업교육훈련시설 관련 분야의 전문가
 - 일자리기획단장, 재정기획관 (필요시 관련 국·본부장 참여)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 서울특별시 4개 기술교육원 원장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간 사 : 일자리정책과장
 - 운영방법 :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운영예정
-
- 통합운영위원회는 각각의 기술교육원을 통합할 수 있는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각 교육원 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술교육원이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고 자기 주도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이 요구됨.
 - 결론적으로 그 동안 시의회에서 지적해 온 ‘산업현장 맞춤형 교과과정 부족’, ‘4개 훈련기관 간의 유사 중복성’, ‘기업이나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운영위원회의 신설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시²⁾하고 있는 점과 '16년부터 일자리기획단이 일자리노동국으로 신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제11조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수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제2호)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서울특별시 일자리기획단장 및 재정기획관”(제3호)은 “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가 적절함.

2) 대법원 1996.05.14. 선고 96추15 판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는바(지방자치법 제43조),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위 1993. 3.9. 선고 92추116 판결, 1994. 4. 26. 선고 93추 175 판결 등 참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학자격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p> <p>1.~5. (생략)</p> <p>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u>제2조제 11호</u>에 따른 차상위 계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입학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u>제2조제 10호</u>에 따른 차상위 계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u>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합리</p>

적 운영 및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업교육훈련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교육훈련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서울특별시 일자리기획단장 및 재정기획관

4.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

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신 설〉

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 ① 수탁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위탁한 직업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과 사용료 부과·징수는 운동장 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설에 한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 등) ① 수탁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위탁한 직업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과 사용료 부과·징수는 운동장 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설에 한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